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관련 법률 제정〉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428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체계	4
2. 총괄적 검토	5
3. 총칙(제1장)	8
4.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장)	10
5. 학교 등에서의 정보보호 교육 등(안 제3장)	16
6.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제4장)	2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고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민의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정보보호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안 제7조).
- 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육성과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3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4개 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5조(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실태조사)

제3장 정보보호 교육의 시행

- 제8조(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 제9조(학교 등에서의 정보보호 교육)
- 제10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교육)
- 제11조(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제4장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

- 제12조(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 제13조(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
- 제14조(자격제도)

2. 총괄적 검토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 기반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해킹, 랜섬웨어, 지능형 지속 공격(APT) 등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해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제정안은 정보보호교육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에서의 교육 지원, 공공기관 직무역량 교육 실시 등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공신력이 있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우수한 정보보호 인재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한 면이 있음.
- 다만, 총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이미 정보보호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 제정안과 지원 규정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입법효율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보호 산업 진흥계획 수립 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정안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이 있음.
- 둘째,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 인력양성을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및 정책의 탄력성 관점에서 적절한지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정 산업 또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개별 법률을 제정할 경우, 유사하게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인력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법 요구가 연쇄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전문인력 수요는 기술 발전, 산업 환경 변화 및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시기별·상황별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그때마다 입법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은 제도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정보보호 교육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각 기관이 소관분야 교육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책의 수행주체를 과기정통부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수정하며,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부설로 정보보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방부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국방·안보 관련 정보의 제공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어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국정원은 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분야 정보보호 교육 및 인력양성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민간분야 전문인력 육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총칙(제1장)

가.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 요지

-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2) 제정안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를 말한다.
2. “정보보호 전문인력”이란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조는 제정안이 규율하는 핵심 대상인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정보보호”의 경우 이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정보보호산업법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서 “정보보호”의 정의를 달리 정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정보보호산업법을 인용하여 기존

정의 규정을 사용하는 것은 입법효율성과 체계적합성 측면에서 적절해 보임.

- 다만, “정보보호 전문인력” 경우 전문인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조문에 명시되고 있고, 안 제2조제2호의 규정도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장)

가.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 및 제6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 정보보호 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제1호)
 - 정보보호 교육의 추진 내용(제2호)
 - 정보보호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제3호)
 -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제4호)
 -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제5호)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제6호)
 - 그 밖에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2) 제정안 조문

제5조(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보호 교육의 추진 내용
3. 정보보호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
5.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6.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5조는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시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한편, 안 제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에 맞추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필
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정부가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으로써 중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계획 및 세부적인 실행 사항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현행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
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원천
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
항’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은
산업계 수요 맞춤형 정보보호 인력 양성, 중·고등학생 대상 초
급 정보보호 교육 및 대학 정보보호 교육 확대 등 정보보호 교
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이미 담고 있음.
-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경우 기존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행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동의

하나 시행계획 수립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광역지자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은 정보보호 교육사무 총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보보호 교육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고 각 기관은 소관 사항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보보호 교육사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교육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국가정보원은 공공분야 정보보호 교육에 대해서 이미 「공무원 인재개발법」, 「행정안전부 직제」 제13조 및 제3장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안전훈련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어 제정안은 민간분야 정보보호 교육에 한해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실태조사(안 제7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정보보호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7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7조 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정보보호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7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인력양성과 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호 인력 현황 및 교육 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이 이에 협조하도록 할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기본계획과 달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체가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태조사의 주체를 각 계획의 수립 주체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교육 및 인력 관련 실태조사는 정보보호 교육사무 관리체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인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국방부는 안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방·안보 관련 정보의 제공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어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5. 학교 등에서의 정보보호 교육 등(안 제3장)

(1) 제정안 요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제1호)
 - 학교 정보보호 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제2호)
 - 그 밖에 학교 정보보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3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음(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2) 제정안 조문

제9조(학교 등에서의 정보보호 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정보보호 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정보보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생과 행정기관·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및 관련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보호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특히, 안 제9조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반영,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적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현재도 각급 학교에서는 정보통신윤리,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폭력 예방, 정보보안 기초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이 이미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제정안을 통한 정보보호 교육이 기존 교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별성과 추가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둘째, 안 제10조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정·공공기관(산하기관 포함) 정보보호 및 정보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등 이미 행정·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정보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존 교육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입법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 제9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정보보호 교육 지원, 제10조에 따른 행정·공공기관 직무역량 교육 실시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보호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도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주도할 수 있도록 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에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별도의 협의 절차를 규정에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임.

6.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제4장)

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안 제12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제1호)
 -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제2호)
 - 정보보호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제3호)
 -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의 지원 (제4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 사업과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음(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항)

(2) 제정안 조문

제12조(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정보보호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4.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육성 사업과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2조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육성 사업, 학점이수 인턴제도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추진·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하고 인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력 운영을 합리화하며 미래·해외 인재 발굴과 학점

이수 인턴제도 등을 통해 미래 정보보호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보보호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¹⁾는 시책에 관하여 규정한 제1항 각호의 내용이 일부 다른 것을 제외하면 이미 안 제12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에 같은 내용의 규정을 중복하여 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은 정보보호 교육사무 관리체계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해 각 기관별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안 제12조제1항의 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수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보호 교육사무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정 기능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추가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3항과 규정이 동일한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설립·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육성 사업과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나.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안 제13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3조)

(2) 제정안 조문

제13조(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 ① 정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한다.

②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2. 정보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정보보호 전문인력 훈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4. 정보보호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5. 국내외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6.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 관련 사업

(3) 검토사항

- 안 제13조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강사 양성,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함.

- 이는 사이버 침해 위협 증가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공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체계를 직접 구축·운영함으로써 정보보호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정보보호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양자컴퓨팅의 상용화 가능성,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확산 등으로 기술·환경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은 공공부문이 직접 전담하기보다는 시장과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고 국가는 이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으며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인 형태로 인력개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²⁾을 이미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 설립 규정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야별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육성

2)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분야별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보호인력개발원은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부설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명칭도 일부 수정³⁾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가정보원은 이미 공공분야 정보보호 교육 및 인력양성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맡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인력개발원은 민간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담당토록 하되,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야별 전문교육기관과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인력개발원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다. 자격제도(안 제14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2) 제정안 조문

제14조(자격제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4조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자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사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임.
- 따라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관련 자격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격은 이미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술자격인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자격으로 정보보호전문가, 개인 정보관리사 등도 운영 중으로,

개별법에 따른 근거가 필요한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가 도입·운영이 가능하며 입법효율의 측면에서 현행 자격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나 운영 시책에 관한 규정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설립·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문 의 처
02)6788-5228